

중국 식품제조시설 허가 절차

최근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식품업계로부터 중국의 식품제조 허가 절차 및 규정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허가조건, 신청시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등 주요사항을 아래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식품생산허가를 각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간 세부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허가 신청 전에 생산시설이 소재한 각 성·시 질량(품질)기술감독국에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1. 근거법령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中華人民共和國產品品質法)》제13조, 《공업제품생산허가증시행조례(工業產品生產許可證試行條例)》제2조

2. 허가조건

- 1) 식품생산가공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국가의 관련정책이 규정한 기업설립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영업면허(營業執照), 식품위생허가증, 기업코드증서(企業代碼證書)를 기히 취득한 기업이어야 한다. (코드증서가 필요 없는 경우 제외)
- 2)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설비, 가공장비, 관련되는 보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원료처리, 가공, 저

장 등 공장건물 또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방사가공기술 등 특수한 기술설비를 식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계량 등 관련법규, 규칙에 규정된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4) 식품가공공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생산가공과정은 엄격하고 규범화되어 한다. 생물성·화학성·물리성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과 가열식품, 원료와 반제품·제품, 오래된 식품과 신선한 식품 등 간의 교차감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5)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식품생산에 사용하는 원재료, 첨가물 등은 국가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식용이 아닌 원재료, 보조재료로 식품을 가공해서는 안된다.
- 6)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유효한 제품기준에 따라 생산을 진행해야 한다. 식품품질안전은 반드시 법률, 법규 및 상응한 강제기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강제기준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업이 채택하기로 명시한 기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7) 식품생산가공기업의 책임자와 주요 관리자는 식품품질안전 관련 법률, 법규에 관한 지식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식품기업은 식품생산에 필요한 전문기술자, 숙련기술공, 품질관리요원을 보유해야 한다. 식품생산가공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신체가 건강하고 전염병 또는 식품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질환이 없어야 한다.

8)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에 알맞은 품질검사수단과 계량측정수단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반드시 제품출하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검사기기와 측정기기는 계량검정에 합격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출하검사능력이 없는 기업은 국가질검총국이 발표한, 법정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해야 한다.

9)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생산 전 과정에 걸쳐 표준화 시스템을 수립하고 표준화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기업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 보완하여 원재료 구입, 제품출하검사에서 a/s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품질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직종별 품질책임제를 수립하여 품질심사를 강화하고 품질부결권(否決權)을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10)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깨끗하고 식품을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식품 포장과 표시는 상응한 규정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노출포장식품의 경우 출하시의 대포장에 사용표시를 표기할 수 있으면 표기해야 한다.

11) 식품 저장, 운수, 하역에 사용되는 용기, 포장, 도구, 설비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식품

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12) 종류별 식품 《심사세칙》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 담당기관

국가, 성, 시 질량(품질)기술감독국

4.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 1) 식품생산허가증신청서(각3부, 공인 날인, 양식문안은 별첨2 참조)
- 2) 영업면허(營業執照)(사본, 각 3부)
- 3) 식품생산허가증(사본, 각 3부)
- 4) 기업코드증서(코드증서가 필요 없는 기업 제외. 사본, 각 3부)
- 5) 기업 책임자(법정 대표자)신분증(사본, 각 3부)
- 6) 기업 생산장소 도면(각 3부)
- 7) 기업생산공정도(각 3부, 관건설비와 매개 변수 표기)
- 8) 기업 품질관리문건(1부)
- 9) 기업표준문안(기업표준을 집행하는 기업. 1부)
- 10) HACCP인증증서, 수출식품위생등록(등기)증서(증서를 기히 취득한 기업. 사본, 3부)

11) 증서발급세칙에 규정한 기타 서류

2) 증서발급 전 제품검사 완료: 30일내(특수제품 제외)

5. 허가절차

1) 신청

신청인이 식품생산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접수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3) 심사와 제품검사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심사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대한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현장심사 대상기업에 대해 심사팀이 현장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지정 받은 검사기관이 증서발급 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4) 상급기관 보고

심사를 거쳐 상급기관 보고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신청서류, 현장 심사확인서류, 증서발급 검사보고서를 省 질량기술감독국에 보고한다.

5) 허가증 발급

국가질검총국 또는 省 질량기술감독국이 발급한 식품생산허가증을 기업에 송달한다.

6. 처리기한

가. 전문가심사와 제품검사기간

1) 전문가 심사완료: 60일내

나. 결정기간

신청 접수 결정 후 20일내(전문가심사기간과 제품검사기간 별도)

다. 증서발급기간

국가질검총국 또는 省 질검국이 허가결정을 내린 후 10일내에 식품생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송달해야 한다.

7. 수수료

가. 징수 근거

- 1) 《공업제품생산허가증시행조례》
- 2) 원 국가물가국, 재정부(1992)價費字127號《공업제품생산허가증비용관리잠정규정》
- 3) 국가계획위원회 財綜[2002]19호 문건 《재정부, 국가계획위원회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심사비용 등 비용항목 귀속부서 조정 등 사항에 관한 통지》

나. 비용기준

- 1) 심사비용: 기업당 2,200위엔. 동일 심사에 추가되는 증서신청은 건당 440위엔의 심사비용 추가.
- 2) 공고비용: 증서신청건당 400위엔
- 3) 제품검사비용: 국가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기업이 검사기관에 납부.